

www.seoul.go.kr

제3684호 2021.6.14.(월)





목 차

◈ 고 시

제2021-273호	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, 이ㆍ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
	조치 고시2
제2021-277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
	고시9
제2021-279호	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, PC방, 영화관,
	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… 16
제2021-280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	7시


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73호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(2021.6.11.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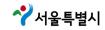
- 1. 적용기간: '21. 6. 14.(월) 0시 ~ 7. 4.(일) 24시
- 2. 대 상: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, 이미용업, 숙박업
- 3. 내 용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- 4. 위반 시 조치사항
 -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 - 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- 경고,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, 폐쇄명령 등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)

		행정처분 기준				
위반사항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- 5. 업종별 방역수칙

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①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점원 등) *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(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) *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는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	①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* 고령자,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<u>본인확인(신분경제시)</u> 후 수가명부 작성 가능 *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②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
② 출입자 명부 관리 - 이용자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* 고령자,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<u>본인확인(신분증</u>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	③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(강력 권고) *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
*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	④ 공용물품 사용수칙 준수
③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* 게시 *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	⑤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
④ '달 목욕(정기이용권)' 신규발급 금지	⑥ 목욕실,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* <u>다만,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</u> *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는 신규발급 가능	①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
③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 권고) 및 안내판 게시 ★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	®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★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
® 공용물품 사용 시 아래사항 준수 안내	⑨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 음료컵: 사용 금지 평상: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1인용: 2m(최소 1m) 간격 배치 * 다인용: 2m(최소 1m)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구분막, 구분선 설치, 손소독제 의무 비치 	⑩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
⑦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	
®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(목욕실,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) 등 방역수치 게시 및 준수 안내	
⑨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	
0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, 소독대장작성)	
ft)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	
⑫ 방역관리자 지정	
⑬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 (화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*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(7월부터) 	
제외(/월구데) ⑤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*	



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*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	
⑥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'게시 및 안내 *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	
⑰ 샤워시설, 옷장 한 칸 띄어 사용 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	
№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№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※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	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2 이 · 미용업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동치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③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 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 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망역수칙 준수 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 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 음식물 섭취 금지	■음식물 섭취 금지
	⑥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■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,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	■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 건 등	
	(1)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⑪ 손님 예약제 운영	
	⑩ 손님 음료 제공 금지	
	① 대화자제	
추가 수칙	■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 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	■면도나 메이크업,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,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
★ 추가 적용 수칙	■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	■ 이용인원 제한(시설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3 숙박업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		
	① 방역수칙 준수		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		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	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		
	③ 마스크 착용			
	■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 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		
	④ 손씻기		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		
7 E	⑤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A		
공통 수칙	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	■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		
	⑥ 환기하기			
	■ (공용공간)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■ (객실) 퇴실 후 환기	■객실 내 수시 환기		
	⑦ 소독하기			
	■(객실) 퇴실 후 소독 (공용공간)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 건 등 ⑧ 기타			
	◎ 기년 ■방역관리자 지정			
	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		
	①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			
	■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	■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		
추가 수칙	②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			
. 7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케실 등 〈시설내 공용공간 수칙〉 적용	■ 흡연실, 회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케실 등 〈시설내 공용공간 수칙〉 준수		
★ 추가	① 행사·파티 등 주최 금지 *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	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·파티 참여 금지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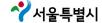
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게스트하우스 파티 등	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
적용 수칙	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*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	③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이용 금지
	③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	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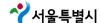
<시설내 공용공간 수칙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▲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	▲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
흡연실	▲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	
	▲대화 금지 안내	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화장실	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	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
	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사용 전/후 손씻기
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탈의실	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	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
글-1'글 	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	
	▲ 손소독제 배치	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
	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	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
샤워실	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	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
	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휴게실	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	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
	▲ 대화 자제 안내	▲ 대화 자제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-1.01	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	
민원 창구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

6. 법적근거

- 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
 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 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.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 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 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
 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(제4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7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
- 8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10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
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77호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흉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 및 홀덤펍, 식당·카페,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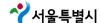
2021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

- 1. 집합금지 조치
 - 기 간: 2021년 6월 14일(월) 0시 ~ 2021년 7월 4일(일) 24시,(3주)
 - 대 상: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 및 홀덤펍
 - 조치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
 - 위반 시 조치사항
 -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- 2. 집합제한(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조치
 - 기 간: 2021년 6월 14일(월) 0시 ~ 2021년 7월 4일(일) 24시,(3주)
 - 대 상: 서울시 소재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 및 돌잔치전문점
 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(시설별 방역수칙1)

준수의무화) 조치

- * 2021. 7. 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 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- 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- 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·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경고
 -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 -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¹⁾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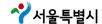
-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
 -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
 - *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① 식당·카페 핵심 방역수칙 중 '22시~익일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' 위반 시
 - ② 집단감염(10인 이상) 발생 시 ③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
 - * 집합금지 기간 : 1주일

3. 영업형태 정의

- 홀덤펍
 -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일반·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·음료·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
- 돌잔치전문점
 -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「식품위생법」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,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, 호텔, 예식장,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

4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
 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 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 - (제1항제2의2호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 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법금
- 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
 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

- ※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 령 고시」에 따름
- ※ 5인이상 사적모임,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「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」에 따름
- 5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
- 6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8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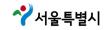
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. 끝.

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(2단계)

□ 식당·카페 (일반·휴게음식점 및 제과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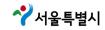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공통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수칙	■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	***실내 - 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	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안내	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1 🗠	⑤ 손씻기	-10-1 1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m'이상)	: 테이블 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 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	⑦ 환기하기	
	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(의무)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창문, 출입문 상시 개방(권고)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內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, 출입문 풍기 가동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(권고) 	개방, 환
	-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	
	8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물건 등	장소 및
	⑨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(대	작성)
	① 이용시간 제한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■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	역우 매장 ■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나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
	 ② 춤추기, 음악소리, 테이블 이동 금지	
	■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	■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
	■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	
	│ │ ■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	■테이블 간 이동 금지 도 유지
	③ 공용집게 사용 등	- 11 1
추가 수칙	■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징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갑 사용, ■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)
	④ 기타	
	■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 ■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: 안내	
	· 공연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(이동설치 불가) · 공연자 마스크 착용 ·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1인 공연 즉시 마이크 캡 교체	· 공연자 마스크 착용 ·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(30분 공연 후 30분간 금 지)
	·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(30분 공연 후 금지)	90조선
	H/1/	



2 독자치정무점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73140 5110 010 70 114 010417 017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•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
	- ■포는 콜립시키 전시콜립경구, 전원전화 세크한 포는 쿠키콜립경구 ㅋ - 성 안내	│ ■포는 걸답시는 현시걸답증포, 한편한의 세고한 포는 포기걸답증포 ㅋ │ 성
		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
	■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 재	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세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	
	● 키ㅡㅡ ㄱㅎ 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	■행사주관 부모 포함 모든 참석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요 0	* 식사, 기념촬영(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) 시에만 잠시 미착용(그 외 대
	* 식사, 기념촬영(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) 시에만 잠시 미착용 허용 (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)	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)
	④ 손씻기	
공통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수칙	⑤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- 개별 돌잔치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	■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- 개별 돌잔치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
	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 ⑥ 환기하기	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(의무)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	
	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■ 창문, 출입문 상시 개방(권고)	
	-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內 -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, 출입문 개방, 환풍	
	기 가동	
	-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■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(권고)	
	- 사진 미디 10분 이경 된기(전포) -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	
	⑦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	
	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 건 등	
	®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	
	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카막이 설치	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
추가	한국에 될지 ■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안내	많는 공꾸 되기/데이를 간던 되면 많기 ■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
수칙	■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	■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	■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	■식사 시 대화 자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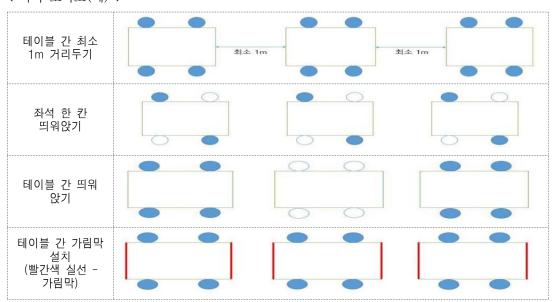
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② 만남 시	
	■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	■대화 시 마스크 착용
	■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 안내	■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
	③ 시설 내 공용공간	
	■흡연실, 화장실, 휴게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▲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	▲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
흡연실	▲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	
	▲대화 금지 안내	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화장실	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	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
	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사용 전/후 손씻기
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탈의실	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	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
걸의걸	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	
	▲ 손소독제 배치	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
샤워실	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	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
사건 크	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	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
	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휴게실	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	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
	▲ 대화 자제 안내	▲ 대화 자제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OHIZ	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по	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	
민원 창구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< 좌석 도식도(예) >



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

♦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79호

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,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, 일반관리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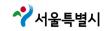
2021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

- 1. 기 간 : 2021년 6월 14일(월) 0시 ~ 2021년 7월 4일(일) 24시
- 2. 대 상
-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
-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* 등
 - * ① 3,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 중 '한국표준산업분류' 상 종합소매업
 - ②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규정(제2조 제3호)에 따른 대규모 점포(도매업 제외) (예: 대형마트, 특정 품목(의류·가전·가전용품·서적 등)에 특화한 전문점, 백화점, 쇼 핑센터, 복합쇼핑몰, 공구·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)
-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(대리점)
- 3. 내 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 - 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 - * 예방접종 완료자 =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
 -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□ 노래연습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운영시간, 이용인원 등	
단계별 (2단계)	■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■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허가면적 4㎡당 1명) ■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4㎡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,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	■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 ■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■코인노래연습장 4㎡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, 룸별 1명씩만 이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시설별 또는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*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** 수기명부 불가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*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 수기명부 불가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
공통 수칙	⑥ 손씻기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(권고)
	 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
	⑧ 환기하기	
	■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* (10분 이상, 대장작성) *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, 30분간 환기	
	③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 건 등 ** 손님이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종료 직후 소독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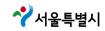
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⑩ 기타 ■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	① 마이크 사용 등	
수칙	■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□ PC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이용인원 등	
단계별 (2단계)	■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■좌석 한 칸 띄어 앉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
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공통 수칙	③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음식섭취 금지	
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*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*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 손씻기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환기하기	
	■일 3회 이상 시설 환기(대장작성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⑦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① 이용시간 제한 강력 권고	
	■1인 2시간 이내 사용제한 강력 권고 안내	■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
추가 수칙	② 공용공간	
	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	①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	
서울시 강화 조치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*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 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확인)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정확히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② 기타	
	■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1명으로 제한 권고 *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 ■좌석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(예. 앉은 시선 높이) ■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, 헤드셋, 마우스,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	■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1명으로 제한 권고

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이용인원 등	
단계별 (2단계)	■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	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
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 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음식섭취 금지	
공통 수칙	■상영관,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	■상영관,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
	⑤ 손씻기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 하기 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	■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
	⑦ 환기하기	
	■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(대장작성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Y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 건 등	
	⑨ 기타	L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■시설 내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시설 내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	① 상영관 외부	
추가 수칙	■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(매표예매장소)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 블 간 칸막이 설치	■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(매표예매장소)에서 취식하는 경우, 4 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
	①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서울시 강화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*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확인)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 예매자(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)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-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선 번호 정확히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 예매자(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)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
조치	② 기타	
	■매표소, 매점,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 *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	
	■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	



□ ¢락식·먹티방 등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이용인원 등	
단계별 (2단계)	■이용인원 제한 * 시설 허가신고면적 8㎡당 1명	■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허가신고면적 8㎡당 1명
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음식섭취 금지	
⊒ E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
공통 수칙	⑤ 손씻기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단계별 이용 가능 인원 제한 적용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■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	②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■ 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, 대장작성)	

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소독하기 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멀티방은 퇴실 후 소독 ⑨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서울시 강화 조치	①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*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 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확인)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삼번호 정확히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② 기타 ■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1명으로 제한 권고 *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 ■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	■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1명으로 제한 권고

□ 직업훈련기관(일반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단계별 (2단계)	① 이용인원 등 ①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, ②안 중 선택	①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, ②안 중 선택

	3084호 (기술국	크^ 2021. 6. 1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L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음식섭취 금지	
	■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⑤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 (권고)
공통 수칙	⑤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두기	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⑦ 환기하기	
	■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⑧ 소독하기	<u></u>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) ■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(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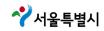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추가 수칙	① 전일제 경우 식사 B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 ② 사워실, 탈의실이 있는 경우 B 공용공간 수칙 적용	
서울시 강화 조치	①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*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 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확인)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정확히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② 기타 ■수료기준에 맞는 훈련생 조기 종강 권고	

□ 직업훈련기관(기숙형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단계별 (2단계)	① 이용인원 등 ①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, ②안 중 선택	①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, ②안 중 선택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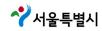
	3004 <u>2</u>	2021. 0.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음식섭취 금지	
	■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⑤ 손씻기	<u> </u>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 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-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	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②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⑧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(시설별 차등적용)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9 기타	I
	■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) ■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(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)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입소자, 종사자, 방문자에 대한 권고조치	
	■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	■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
	■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안내	■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
	② 샤워실, 탈의실이 있는 경우	
	■ 공용공간 수칙 적용	
추가 수칙	- 숙박시설 운영 금지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(공통) 외출 자제,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- (입소前) 2주간 예방격리 권고, 2일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・마스크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충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사워실・화장실 등) 소독 강화 역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매일 발열체크,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	- 숙박시설 이용 금지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운영하는 경우, 이용 가능
	①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
서울시 강화 조치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*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 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확인)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정확히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② 기타	
	■수료기준에 맞는 훈련생 조기 종강 권고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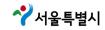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	L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소독하기(권고) 또는 손 씻기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
공토	⑤ 환기하기	l
공통 수칙	■실내시설의 경우,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■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,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
	⑥ 소독하기	
	■일 3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(쇼핑용카트) 등	
	⑦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①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	
	■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② 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	00011111
	■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	■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사용금지
추가	③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하지 않기	
수칙	■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	■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금지
	④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	
	■식당,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방역 수칙 적용	■식당, 카페 등의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		
	① 방역수칙 준수		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		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	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		
	③ 마스크 착용		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		
	④ 손씻기			
7 E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소독하기(권고) 또는 손 씻기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		
공통 수칙	⑤ 환기하기			
	■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- 창문, 출입문 등 상시 개방(권고)			
	⑥ 소독하기		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(쇼핑용카트) 등			
	① 기타		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		
10	① 기타(2단계시 적용사항)			
울시 강화 조치	■시식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	■시식시음 서비스 사용 금지		



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 · 방문자 수칙
	① 방역수칙 준수(의무)	
	■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 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증상확인 협조,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
	③ 방문자(근무자 외)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	■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(의무)	
공통	■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	
수칙	■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■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자제	
	■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<u> </u>
	■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의무)	
	■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■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 ■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-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(운영대장 작성) *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	■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 ■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- 조별 식사시간 준수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 · 방문자	수칙
	⑧ 환기하기		
	■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■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(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)하 고 자연환기 병행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■회의,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	
	③ 소독하기		
	■일 1회 이상 소목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책자, 공용물품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,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■개인별 사무공간(책상 등)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■공용물품(전화기, 해드셋, 마이크 등) 소독 후 사용하기	
	⑩ 기타(의무)		
	■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■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■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■증상확인 협조 ■증상 있을 경우,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	
	① 근무형태		
	■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	■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	
추가	■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,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-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	■충분한 휴게시간 이용	
수칙	②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출장, 행사	I.	
	■출장 최소화,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 (영상)으로 실시 ■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안내 ■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	■출장 최소화 하기,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참여 ■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■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	

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③ 구내식당, 통근버스, 기숙사, 시설내 공용공간	
	■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	■해당 방역수칙 준수
	① 기타(2단계시 적용사항)	
서울시 강화 조치	■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/2 권고 ■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권고(일 1회 이상 의무) ■근로자 간 칸막이는 90cm 높이 이상 설치 ■휴게실,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제한 권고 ■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권고 ■환기(매 2시간), 소독(물품 등 일 2회, 전체사업장 주1회 이상) 실 시 권고	

□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		
	▲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	▲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	
흡연실	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		
	▲ 대화 금지 안내	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	
-11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	
화장실	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	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	
	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사용 전/후 손씻기	
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	
탈의실	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	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	
걸의걸	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		
	▲ 손소독제 배치	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	
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	
	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	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	
샤워실	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	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	
	▲ 공용물품×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	
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	
휴게실	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	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	
	▲ 대화 자제 안내	▲ 대화 자제	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	
OHIE	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	
по	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		
민원 창구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	
	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	

- 4. 위반시 조치사항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 -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-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* 및 시설폐쇄 명령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 - 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- ※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		행정처분 기준				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
- 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6월 14일 0시 부터
- 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 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 대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1항에 따라 과대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- 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(노래연습장 02-2133-5238, PC방·오락실 02-2133-5242, 영화관·멀티방 02-2133-5236, 대형유통시설 02-2133-5258, 콜센터 02-2133-5243),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(직업훈련기관 02-2133-5463)
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80호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

정부는 그 간 수도권에서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49조제3항,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종교시설(교회, 사찰, 성당 등)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

1. 기 간: 2021년 6월 14일(월) 0시~2021년 7월 4일(일) 24시

2. 고시대상: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(교회, 사찰,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)

3. 고시내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				
공수 수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■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				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			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 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 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			
	④ 마스크 착용					
	■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 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				
	⑤ 음식섭취 금지					
	■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			
	⑥ 손씻기				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		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						
	②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						
	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정규예배미사법화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유지 -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 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	■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- 수칙 준수하여 참여						
	⑧ 환기하기						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종교행사 전/후 반드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						
	⑨ 소독하기	I					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종교행사 전/후 반드시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책자,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						
	10 기타						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						
	① 비말발생(침 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) 금지							
추가 수칙	■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(독창 제외) 금지 안 내	■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(독창 제외) 금지						
	②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							
	■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	■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						
	③ 시설 내 공용 장소							
	■휴게실, 탕비실,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흡면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						

4. 위반 시 조치사항

-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관리자·운영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,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



- 5. 법적근거(처분근거)
- 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3항
- 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 및 제4항 등
- 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
- 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 법」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- 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
- 담당자 : 문화정책과 도근호 주무관(02-2133-2522)
- 담당자 :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(02-2133-2532)

•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 •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고					
선	0					
람	람					